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회)	

법제처 직제 일부 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윤호중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제처에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4급 또는 5급 1명)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5급 1명)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예산처 및 법제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3. 4. ~ 3. 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

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238”을 “240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237”을 “239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222”를 “224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1]

법제처 공무원 정원표(제15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238</u>	<u>240</u>	+2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237</u>	<u>239</u>	+2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222</u>	<u>224</u>	+2
·	·	·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19